

제 5 절 세무행정

I. 세 정 일 반

II.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I. 세정일반

1. 현황

가. 과세물건 현황

- 토지 : 65.20km² 【주거지역 : 8.18km² / 자연녹지 : 55.32km² / 기타 : 1.70km²】
- 주택 : 66,493동 【단독주택 : 21,856동 / 공동주택 : 30,541동 / 기타 : 14,096동】
- 차량 : 73,335대 【관용 : 184 / 비영업용 : 66,116 / 영업용 : 7,035】
- 법인 : 1,870개소 【건설 : 476 / 제조 : 425 / 서비스 : 197 / 여객, 화물 : 132 / 기타 640】
- 기타 : 선박 【19척】 , 골프회원권 【2,352명】 , 면허업종 【704종】

나. 세무공무원 현황

구 분 \ 직급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정 원	45	1	7	11	20	4	2
현 원	45	1	7	19	13	3	2
증 감	0	0	0	8	△7	△1	0

2. 지방세

가. 조세의 분류

조세	지방세	구 세	재산세, 면허세	보통세
			사업소세	목적세
		광역시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농업소득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보통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국 세	내국세, 관세	국가 일반재원 조달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개발재원 조달		

나. 구민 1인당 담세액

구 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인 구 수(명)	264,764	270,871	274,223	274,627	285,760	292,187
지방세액(천원)	128,799,000	110,255,492	99,209,000	144,488,000	104,219,334	92,046,825
담 세 액(천원)	486	407	362	526	365	315

【제2부 부문별 행정】

※ 1인당 담세액 = 결산시점의 징수액(시세 포함) ÷ 결산시점의 인구수
 단, 2006년도 지방세액은 2006.03월 현재 세입예산액 ÷ 3월 현재 인구수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자치구세입 징수실적 대비 6,174백만원 증수하였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2004년도		증 감 (징수액)	비고
	목 표 액	징 수 액	목 표 액	징 수 액		
총 계	125,493	139,869	123,543	133,695	6,174	
지 방 세	12,204	12,476	14,344	15,504	-3,028	
세 외 수 입	22,884	36,975	30,061	39,140	-2,165	
지방교부세	9,501	9,101	3,365	3,355	5,746	
지방양여금	-	-	258	258	-258	
조정교부금	35,009	34,983	32,082	32,010	2,973	
보 조 금	45,895	46,334	43,433	43,428	2,906	

※ 매년도 결산일 기준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의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일원화되고 과표 초과분(9억원) 재산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액이 전년도 대비 3,180백만원(24%)이 감소하였으나, 2005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 1% 높이기 추진 결과 2005년도 부과분의 징수율이 0.9% 증가한 12,15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 날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에 대한 세수확보차원에서 과년도 체납세 및 체납세외수입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과년도 체납세에 대하여는 『체납세 책임징수제』 시행하여 1,420건, 289백만원을 정리하였고 부동산 소유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 결과 2,724건 2,72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봉급생활자에 대한 급여압류,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의 행정규제 조치로 1,509건에 71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2회 설정하여 각종징수대책보고회 3회 개최, 세외수입 담당자부서별 체납세 경진대회 3회 개최하는 등 7,102건에 1,643백만원의 정리실적을 거두었다.

□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시행한 결과 개별주택 20,985건(표준주택:433 적법:19,238 무허가:1,314)의 주

택특성을 전수조사하여 적법주택(무허가 1,314건은 2005년 재산세 부과를 위해 가격산정, 단 공시제외)의 개별주택가격 가격산정 및 결정·공시하였고, 주택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별주택조사업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135건(미조정 111건 상향 2건 하향 22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처리함과 동시에 416건(상향 162건, 하향 254건)의 직권정정 처분을 함으로써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과세근거 자료 구축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과세자료 구축으로 인한 세수자료 확보하였으며 적정한 개별 주택가격 산정으로 민원을 최소로 발생시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지방세법(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등)을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에 대한 사전구제의 필요성과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사전에 차단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무정보 사전예고제(취득세 납기한 도래일 1주일 전 납부 안내엽서 발송 등)를 운영하고 납세자 편의 시책인 지방세 전자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제의 활성화 노력을 강화 하였다.

Ⅱ.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부서운영 방침

- 가. 자주재원 확충노력 지속 추진
- 나. 지방세정의 공평·신뢰성 확보
- 다. 선진세정을 위한 전문성 제고
- 라. 구민감동 세정서비스 제공

2.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목표

2005년 결산 대비 22,181백만원 감소된 114,058백만원을 세입목표로 책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일반회계			2005년도 목 표 액	비 고
	목 표 액	2005대비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14,058	-22,181	90.9	125,493	
지 방 세	12,976	772	106.3	12,204	
세 외 수 입	15,623	-7,261	68.3	22,884	
지 방 교 부 세	4,700	-4,801	49.5	9,501	
조 정 교 부 금	29,491	-5,518	84.2	35,009	
보 조 금	51,268	-5,373	111.7	45,895	

※ 기준일 : 2005년 목표액은 결산시점, 2006년 목표액은 2006.3월 현재임

가. 주요 증감 사유

금년도 세입은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신축 아파트로 인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5,000백만원의 감소와 더불어 세외수입 이월 사업비가 2005.03월 현재 확정되지 않아 금년도 수입으로 계상되지 못해 감소하였고, 의존수입 부분에서의 감소는 지방교부세 중 지방분권 교부세가 삭감되어 대폭 감소하였고, 부동산 거래세 수입의 감소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와 지방양여금의 폐지를 들 수 있겠으나 국·시비의 사업비가 증감함에 따라 의존수입의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나. 세입여건

지방세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하여 전반적으

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구서동 롯데캐슬아파트의 신축이라는 특수요인으로 인하여 보유세에 있어서는 소폭의 증수가, 거래세 수입은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경제부문의 소득양극화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전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3. 2006년도에 달라진 지방세법 주요 내용

가. 일반 건축물에 대한 「'06년 건물과표 조정기준」

-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상향 조정 : m²당 46만원 → 47만원(2%↑)
- 각종지수, 가감산특례조정 등 국세 건물과표와 불일치 부분 해소
- 특히, 고층건물에 대한 층별 가감산을 「(△10~10%)→(△20~40%)」은 시가를 반영하도록 대폭 현실화

나. 토지 및 건축물 시가 표준액 적용 비율 변경 ('05년 50% ⇒ '06년 55%)

다. 주택분 재산세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16 ~ 7.31일 사이에 한 번 부과 징수

4.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추진

2005년 부동산 취득법인의 전수조사와 법인의 비과세·감면의 적법성 및 현황조사를 통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체납세에서는 체납세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상시 운영하여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 일소에 주력하고, 각종의 체납처분 조치 및 행정규제를 강화하며, 특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새로운 번호판 영치 시스템의 도입으로 체납차량 일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인터넷 공매제도』를 활성화하고 광역단위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노력을 경주하여 자치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방세정의 공평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 권리현장 상의 각종의 권리를 보장 존중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 지방세 이의신청 등 각종의 권리구제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납세자 입장에서의 행정 및 구제노력을 강화하며, 「세무정보 사전예고제」실시로 납세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등 개정된 법령에 대한 홍보를 위한 안내문 발송, 인터넷 홈페이지, 유선방송 등 지역단위 언론매체의 활용과 각동의 통장회의시 설명회 개최 등 대민직접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실무경험 많은 세무공무원을 통한 납세자

【제2부 부문별 행정】

보호창구 및 납세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세무상담 기능을 확충하여 앞서나가는 세무행정을 구현코자 한다.

선진 세정을 위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상급기관 교육 적극 참여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세정혁신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세정의 혁신을 도모하여 지방세 확충에 기반으로 삼고 직무능력 향상과 세무정보 교환을 위한 선진지 비교 견학을 실시코자 한다.